

[붙임 1]

##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안내

### 1. 지원근거
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
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

### 2. 지원목적
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·고등학생 자녀 본인의 학업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역량지원 강화 및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

### 3. 지원대상 및 내용

-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·고등학생 자녀
- 지원내용 : 중·고등학생 1일 1,440원 / 연 240일 지급 (분기당 86,400원)

### 4. 지원시기

- 교통비 : 분기별 지급(3, 6, 9, 12월에 지급)  
※ 단, 시에서 자치구로의 재배정은 월별로 함

구 분	해당 기간	지 급 일
1/4분기	3월1일 ~ 5월 말일	03. 30
2/4분기	6월1일 ~ 8월 말일	06. 20
3/4분기	9월1일 ~ 11월 말일	09. 20
4/4분기	12월1일 ~ 다음해 2월 말일	12. 20

5. 사업비 : 15,064백만원(시비 100%)

## 6. 지급기준

- 신규 지원대상자 :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
- 급여 중지자
  - 교통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초과 및 자녀 연령초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보장 중지 시에는 해당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하고, 다음 분기부터 교통비 지원을 중지
    - ▶ 단,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 보호가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부터 보장비용 징수
  - 휴학, 자퇴,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하되,
    -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검정고시 및 취학·취업을 위한 학원수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 가능
      - ▶ 학원 수강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, 분기별로 해당 대상자의 학원 수강 증빙서류 확인을 거친 후 급여 지급
  - ※ 인터넷 강의 수강 및 독서실 이용자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
    - ▶ 만 18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녀에 지원하며,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
-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
  - 교통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하며, 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·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
  - 가구주의 전출 없이 교통비 지원 대상자가 학업, 현장실습, 예비 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교통비를 지급
- ※ 이 외의 사항은 「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」 중 아동교육 지원비(중고등학생 학용품비)를 준용